

제294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2026.3.17.(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락재 의원 대표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오세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경위

- 발 의 자: 정락재 의원 외 4명
※ (공동발의자) 김태계, 양정희, 김재원, 황숙경 의원
- 발의일자: 2026. 3. 10.
- 심사일자: 2026. 3. 17.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증인의 출석요구, 증언 등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상위법(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9조의2
-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안 제16조)
 - 위반행위 횟수 산정기준, 부과징수 절차 규정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세분화(안 별지)

4. 관련법령 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5.12)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 사무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출석, 증언, 선서를 거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등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권자의 재량 범위가 넓어질 우려가 있고, 처분 상대방의 예측가능성 확보 측면에서도 보완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아래 표와 같이 신설(별표 2.) 하는 것은 법령 위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위 반 행 위 별	금 액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3회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2회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1회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선서 또는 증언 거부	100만원 이하

※ 비교 :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한다.